

#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14
------------	-----

제출년월일 : 1998. 11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 개정사유

-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8.7.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 외국인 투자촉진등의 개혁입법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포함) 준칙이 시달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임

## □ 주요골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조항 신설(제19조의2)
  -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 신설(제19조의3)
  -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농어촌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

### 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 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개정(안)에 현행 "농공단지"를 "농어촌산업단지"로 명칭개정 추진중으로 현행 법대로 농공단지로 사용후 같은법개정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임.

### ○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 규정(제22조)

- 10년내 연5퍼센트의 이자로 분할납부

-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등 (4건)

- 10년내 연8퍼센트의 이자로 분할납부

- 주거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등 (3건)

- 5년내 연8퍼센트의 이자로 분할납부

- 공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등 ( 4건)

- 20년내 연4퍼센트의 이자로 분할납부

- 외국인투자기업에 매각하는 경우등 (5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제5호 신설('98. 7. 16 개정)

### ○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이상으로 함(제23조)

### ○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 신설(제23조의3)

전액감면 대상 : 7종

1.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사업 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3. 고용창출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4.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사업

5.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6. 상기 사업중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7. 상기 사업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75퍼센트 감면 : 6종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2. 고용창출효과가 2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4.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5. 상기 사업을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6. 상기 사업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50퍼센트 감면 : 7종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2. 고용창출효과가 100명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4.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수출하는 사업
5. 상기 사업중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6. 상기 사업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7. 조례 제19조의 3에서 규정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 수의계약 매각범위 세부적으로 규정(제39조의 2)

-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m<sup>2</sup>

이하를 5년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m<sup>2</sup>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m<sup>2</sup>이하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조항 신설(제39조의 4)

- 외국인투자기업유치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 아파트형공장, 국가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은 조성원가(토지매입비 + 투자개발비)로 매각
- 매각가격 전액감면 : 3종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방·조성하는 투자장려 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억달러 이상인 대형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 내의 재산
3.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 매각가격 50% 감면 : 5종

1. 제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 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 매각가격 20% 감면 : 4종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법률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 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 관사관리제도의 축소(제51조)

현 행	기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사의 구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급관사 : 시 장 관사</li> <li>2. 2급관사 : 부시장 관사</li> <li>3. 3급관사 : 실국장급 관사</li> <li>4. 4급관사 : 1급내지 3급이외의 관사</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사의 구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급관사 : 시 장 관사</li> <li>2. 2급관사 : 부시장 관사</li> <li>3. 3급관사 : 시설관리사, 기타관사등</li> </ol> </li> </ul>

□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의2, 제95조, 제96조, 제100조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승인(협의)사항

- 입법예고 : '98. 9. 18 ~ '98. 10. 10

실 과 (기관, 개인)	항 목	의 견	검토결과
기업지원과	제23조제9항	<p>· “기술연구집단화단지”, “기술연구집단화 단지의 지정을 받은자”를 산업기술지원에 관한법률특례법의 '98. 9월 공포되어 동법에서 규정한 “산업기술단지”, 산업기술 단지의 사업시행자”로 명칭을 변경함이 타당함</p> <p>· 대부분 또는 사용료율은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 필요</p>	<p>반 영 (동조제10항 신 설) - 테크노파크</p> <p>미 반 영 (이미 1000분의 10으로 감면됨)</p>
재 무 과	제39조의 4 제3항	· “외국인 투자금액이 30억달러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1억달러”로 변경함이 바람직함	반 영

○ 기타 참고사항

·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준칙 : 경기도 회계13330 - 2351('98. 8. 24)

□ 불 임 : 조례개정안 1부

##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교부율"을 "귀속비율"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중 "600제곱미터이하 토지"를 "일단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 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을 적용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등)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시장이 경영수의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 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3조제2항중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제6항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로 하고, 제7항을 삭제하며, 제8항과 제9항 및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⑩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 단지의 조성 또는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자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외·투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중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중설하는 사업

##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  
인 사업
-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  
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  
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  
로 이전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 사. 제19조의3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  
의 공유재산

제24조제4항중 “인근의 매매 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기관  
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 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  
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  
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 하는 총 면적	×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

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 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 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 요율은 연 15 퍼센트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이에 준하는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제4항중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를 “공유임야 관리전담부서”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 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

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등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등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체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⑥시장이 승인한 난민정착사업의 불성취에 따라 이미 형성된 정착민들의

점유 또는 경작 사유지에 대한 정착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대체 토지를 제공하기 위한 때

제3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 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

②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 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 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제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 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 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50조중 "(이하 '부시장'이라 한다). 실·국장등"을 "시설관리사등"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시장관사
2. 2급관사 : 부시장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기타관사등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 12월 31일 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생략) ②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관 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 였을시는 시장은 당해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 산금 또는 변상금의 100분의 3 0(도 교부율에 따라 조정)을 귀속 시킨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u>귀속비율</u> ..... <u>다만</u> <u>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 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 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 분의 10으로 한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 조의 규정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유재산 과 공유재산사용료등의 세입조치도 귀속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행과 법령상의 용 어로 수정</li> <li>○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 상금은 측량, 감정평가등 의 비용없이 세입조치되 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과 형평성 유지</li> </ul>
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 한 보상금 지급) ①(생략) 1. 보상금액은 <u>부동산과세시 가표준액</u> 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이하까지는 100 분의 20까지로 하고, 5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 에 100분의 2를 추가하 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 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생략) ②(생략)	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한 보상금 지급) ①(현행과 같음) 1. .... <u>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u> .... ..... 2.(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4988호)에 따른 용어 수정</li> </ul>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u>제10조(재산증감 및 현재액</u>  <u>파악)공유재산의 종류별로</u>  <u>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u>  <u>증감 및 변동사항을 짜짐없</u>  <u>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u>  <u>파악하여야 한다.</u></p> <p><u>제11조(관리 및 처분)①-②(생</u>  <u>략)</u>  <u>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u>  <u>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u>  <u>지를 할 경우 다음 재산에</u>  <u>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u>  <u>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u>  <u>있다.</u>  1. 일반시지역 : <u>600제곱미</u>  <u>터 이하 토지</u>  2. 시가 1,000만원이하의  기타재산</p> <p>④ (생략)</p> <p>&lt; 신 설 &gt;</p>	<p><u>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u>  <u>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u>  <u>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u>  <u>월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u>  <u>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u>  <u>야 한다.</u></p> <p><u>제11조(관리 및 처분)①-②(현</u>  <u>행과 같음)</u>  <u>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u>  <u>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u>  <u>지를 할 경우 다음 재산에</u>  <u>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u>  <u>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u>  <u>있다.</u>  1. 일반시지역: <u>일단의 면적</u>  <u>이 600제곱미터 이하 토지(</u>  <u>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u>  <u>함한다.)</u>  2. 시가 1천만원이하의 기타  재산  ④ (현행과 같음)</p> <p><u>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u>  <u>범위)법 제88조제1항제10호,</u>  <u>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u>  <u>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u>  <u>제2항 제27호, 제96조제10호,</u>  <u>제100조제2항제5호규정에</u>  <u>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u>  <u>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u>  <u>적용한다.</u></p> <p><u>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u>  <u>대부·매각·대상등)제19조의</u>  <u>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u>  <u>자기업에 대부·매각이</u></p>	<p>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은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p> <p>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외국  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p> <p>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투자유치  지역이 되도록 함.</p>
< 신 설 >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 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p> <p>2.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 단지내의 공유재산</p> <p>3. 공업배치 및 품질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 재산</p> <p>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 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 치하기 위하여 개발·관 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공유재산</p> <p>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임종별 산업 단지내의 공유재산</p> <p>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p>	<p>-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 법률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 도 허용</p> <p>-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 법률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 도 허용</p> <p>-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외국인투자지역지정 및 개발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매각 허용</p>
제20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 지) 대부한 임대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삭 제>	o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제39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또는 영세민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p> <p>3. 영 제9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4. 천재·지변·기타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구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p> <p>5.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잠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퍼센트의 이자를 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p> <p>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p> <p>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기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개발사업 시행이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p> <p>4.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합납부기간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이내 연 5퍼센트의 이자로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풍공사업의 경우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호의 규정의 의한 대상등으로 함</li> <li>○ IMF시대 경제난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요청이 빈번함에 따라 경제사정이 호전될때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해주므로써 지방재정의 어려움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제4호 관련)</li> </ul>

## 신·구 조문 대비표

한 행	개정안	사유
6.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기량재개발 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대하여 전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0년이내 연8퍼센트의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과 현행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상으로 함
7.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와 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외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5년이내 연8퍼센트의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 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함

## 신·구 조문 대비 표

원 행	개정안	사유
	3.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전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으로 분할 납부를 허용
	(4)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른 목적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취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으로 분할 납부를 허용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정안	사유
<p>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p> <p>(신설)</p>	<p>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p> <p>⑦ (삭 제)</p> <p>⑧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점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기발사, 임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점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용 재산의 대부료를 1000분의 25로 정할 경우 무단점유 등 불법건물에 대한 주거용 대부도 가능하다는 확대해석이 가능하므로 적법건물의 대부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li> <li>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에서 100분의 3이상의 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 불요</li> <li>외국인 투자촉진 ※ 국유재산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법률 제17조와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와 제8항에 의거 당해 재산 평점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산정</li> </ul>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신설)	<p>⑩ <u>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u>  <u>의하여 산업기술단지의 조성</u>  <u>또는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u>  <u>산을 산업기술단지의 사업</u>  <u>시행자 지정을 받은자가 사</u>  <u>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u>  <u>사용료율을 담해 자산평정</u>  <u>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u>  <u>로 하되, 월 할로 계산할 수</u>  <u>있다.</u></p>	<p>기업지원과의 변경 의견 반영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특례법  이 98.9.23일에 제정 공포되어 등법 반영)</p>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u>&lt; 신설 &gt;</u>	<p>제23조의3(대부로 또는 사용 용료의 감면)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하가 하는 경우의 대부로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p> <p>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공유재산의 대부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만큼 국유재산과 동일한 규정 적용 필요</li> <li>* 경기도의 경우 고도기술 수반 사업분야로서 조세감면 수혜업체는 '97년 말 현재 전체 외국인 투자기업의 약 8%임</li> <li>○ 국유재산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이 필요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하여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책 마련</li> <li>*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 실태 및 평균 규모: '97년 말 현재 총 461개 외국인 투자기업 (가동기준)중에서 1000만불 이하의 소규모 투자가 전체의 89%이고 제조업부분 평균 직접투자 평균금액은 약 400만불에 불과함</li> <li>○ 침단기술 중심의 지원책에서 탈피하고 현재의 경제난과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고용창출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li> </ul>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사업</p> <p>마.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역경제.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지원            ※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부품 사용현황('96년도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국내부품 사용: 46%</li> <li>· 국내부품 사용 및 모기업 조달병행: 28%</li> </ul> </li> <li>○ 건전한 방향의 투자유치를 지향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 필요</li> </ul>
	<p>바. 가동 내지 마도록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국내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공장등 생산시설을 지역내로 이전해 올 경우에도 산업입지에 관한 지원책 필요            ※ 영국, 말레이지아, 멕시코등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 할 경우에는 기존투자업체가 당해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경우에 소요되는 이전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음</li> </ul>
	<p>사. 가동 내지 마도록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하여 공장을 중설하는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투자 또는 추가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유치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공장중설에 필요한 산업부지 지원책 필요            ※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공장의 설설 또는 중설에 관계없이 신규투자와 동일하게 산업부지를 지원함으로서 추가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있음.</li> </ul>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u>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u></p> <p><u>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u></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 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 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가로 내지 라목에 해당하 는 기존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 하는 사업</p> <p>바. 가로 내지 라목에 해당하 는 경우로서 기존투자법인 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p>	<p>*對韓 외국인투자의 동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 50%가 한국시장 진출 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외 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국내 시장 참식이 우려됨</li> <li>· 제3국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비율은 매우 낮은 실 정이며 수출증대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li> </ul>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24조(토석 채취료등)①~③ <sup>(생 략)</sup>	<p>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의 사업</p> <p>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이 상 200명미만으로 제조업 인 사업</p> <p>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 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 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 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 자사업</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 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가록 내지 라록에 해당하 는 기존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 전하는 사업</p> <p>바. 가록 내지 라록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 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 을 충실하는 사업</p> <p>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외 공 유재산</p>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제26조(대부료의 납기)①시 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 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1.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1일 부터 12월말까지 2.경작외의 목적으로 대부 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 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 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로부터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이 내 ②계약종료의 연도에 있어서 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p>	<p>대부를 받은자가 전용 대부를 받은자가 으로 사용하는 면적 다른 사람과 공용 X 으로 사용하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차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p> <p>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 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 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 다. 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 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 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 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 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 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 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 타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하 여 특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규정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고</li> <li>○ 현행 제2항의 계약종료 연 도의 대부료는 경작목적의 대부동 후납의 경우에 한 하여 대부기간 종료전에 납부하도록 명백히 함</li> <li>○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 부료 납기를 유예</li> </ul>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p>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환차액을 연체하였을 때 연체 이자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li> <li>○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 사유 참고</li> <li>- 매매계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와 IMF시대 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와 이에 따른 반환금 증가 등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한</li> <li>○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시 대부료 연체문제를 해소</li> </ul>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생 략)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립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현행과 같음)</p> <p>④.....  .....  <u>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u>.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운영 시 “다만, 공유립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전 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있으나 특별회계 폐지 후 협조하는 공유임야관리 전 담부서에서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혼선을 초래함</li> </ul>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정안	사유
제39조의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각호와 같다.	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법 위동)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 까지 매각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차부지는 시의 둘 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용·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소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매각 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는 농지법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며, 만약 농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농지 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에 매각면적제한을 두어서는 안됨 ○ 폐차부지의 매각을 지역실정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매각면적의 상한만 규정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별건축물점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공인가를 받은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m'이하, 시지역에서는 300m'이하, 기타지역에서는 700m'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 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 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m'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m'이하로서 1981.4. 30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 공인가를 포함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전 을 바탕면적의 2배이내 토 지(건물바탕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 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등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 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전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 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 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 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 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 할 수 있다.	<p>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 차장·공원등의 공공시설용 지가 아닌 재산(잔여 풍광 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 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 가 학후 10년간 매각목적의 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 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p> <p>2.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p> <p>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 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p> <p>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⑤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 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 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포함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등지 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등지역에서는 300제곱 미터 이하, 광역시·시·군 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 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p>	○ 현행 본문조항을 제5항으로 합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폐구거·폐계방으로 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 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 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 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 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p> <p>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 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 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이 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 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차여면적이 건축 최 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 는 동 차여면적도 포함)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 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전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 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 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p>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신 설>	<p>⑥시장이 승인한 난민 정착사업의 품성취에 따라 이 미 협성된 정착민들의 점유 또는 경작 사용지에 대한 정착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대체토지를 제공하기 위하여</p>	<p>o 1954년 경기도가 승인한 평택시 팽성을 일원 난민정착 사업에 위하여 농민이 해당 토지를 개간경작하여 오던 중 법원판결에 의하여 대양학원 소유토지로 확정되었으며, 국 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등 동일유형의 민원해소를 위 한 조항 신설</p>
<신 설>	<p>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인)</p> <p>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p>1. 산업입지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p> <p>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p> <p>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p>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4.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p> <p>②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 축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위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 지역내의 재산</p> <p>2.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1억달러 이상인 대형공장 건설사업 및 둘 부대시설내의 재산</p> <p>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p> <p>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의·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첨경제부장관 고시 고도 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p>	<p>○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감면 필요</p> <p>○ 대형프로젝트에 의한 공장건설시 부대시설 부지로 감면 필요</p> <p>○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감면 필요</p> <p>○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산업 부분(생명공학, 첨단전기, 전자부품, 정밀, 운송기계등)의 투자시 공장용지 저가 제공 필요</p>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 내의 재산</p> <p>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광장용지내의 재산</p> <p>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 사업내의 재산</p> <p>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p> <p>(5) 영 제96조 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 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p> <p>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투자사업내의 재산</p> <p>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1,000만달러 이상 투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li> <li>○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감면 필요</li> <li>○ 50%감면 사유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낮으므로 차등화 필요</li> </ul>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u>4천억 세사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업체의 공장용지내외 재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전한 방향의 투자유치를 지향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구 필요</li> </ul>
<u>제50조(정의)이 조례에서 관사라함은 시장, 부시장(의하 "부시장"이라 한다) 실·국장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u>	<u>제50조(정의).....</u> <u>.....</u> <u>.....</u> <u>.....</u> <u>.....</u> <u>.....</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사정비계획에 따름</li> </ul>
<u>제51조(관사의 구분)</u> <u>1. 1급관사:시장 관사</u> <u>2. 2급관사:부시장 관사</u> <u>3. 3급관사: 실·국장급 관사</u> <u>4. 4급관사: 1급내지 3급이외의 관사</u>	<u>제51조(관사의 구분)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u> <u>1. 1급관사:시장 관사</u> <u>2. 2급관사:부시장관사</u> <u>3. 3급관사:시설관리사·기타관사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사정비계획에 따름</li> </ul>
<u>제57조(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①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웅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6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 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기준한다.</u> <u>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u>	<u>제57조(사용료 면제)제51조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사정비계획에 따름</li> </ul>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u>1. 사용 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u></p> <p><u>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 여 사용하는 경우</u></p>	<p><u>1. 사용 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u></p> <p><u>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 여 사용하는 경우</u></p> <p><u>3. 시설의 보호·감시등을 위 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 하는 경우</u></p>	

#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714
----------	-----

제안년월일 : 1998. 12. 22.

제 안 자 :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 외 6인

## 1. 수 정 이 유

- 조례중 문구 및 내용의 수정과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코자 함.

## 2. 주 요 골자

- 안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를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 안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9항중 “벤쳐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 및 벤쳐기업 집적시설의 개발”을 “벤처기업 전용 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로 하고 “개발사업시행자, 기수연구집단화, 단지의 지정을 받은자”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수정
- 안 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 범위등) 5항 3호중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를 “다만 기대 이상 다수인의 점유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된 토지로서”로 수정.
- 부칙 4항“(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 4의 규정을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를 “(매각대금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139조의 4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

##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중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를 “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2 중 “적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9조의3 제1호중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3조 제9항중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을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로 하고,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 단지의 지정을 받은자”를 “개발사업시행자”로 하고, 동조 제10항중 “제4조”를 “제10조”로 하고, “당해자산”을 “당해재산”으로 한다.

제39조의2 제3항 제1호중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를 “용지(장래 공공시설 용지를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아닌 재산으로”로 하고, 동조 제5항 제3호중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된 토지로서”로 한다.

제39조의4 제1항 제1호중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제3항중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를 “이 조례 시행후”로  
하고, 부칙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  
례 시행

후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 재산 관리관은 법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p> <p>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한다. ①~②(생략)</p> <p>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등) (생략)            1. <u>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u> 제3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u>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u>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6(생략)</p>	<p>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            .....            .. <u>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u></p> <p>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            .....            .....            .....            .....            ..... <u>준용한다.</u>            ①~②(원안과 같음)</p> <p>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등) (생략)            1. <u>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u>.....            .....            .....            .....            .....            .....            .....            .....            2. <u>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u>.....            .....            .....            .....            .....            .....            .....            .....            3~6(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①~⑧(생략)</p> <p>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벤처기업전용단지</u>, <u>기술연구집단화단지</u> 및 <u>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u>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u>개발사업시행자</u>, <u>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u>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활로 계산할 수 있다.</p>	<p>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①~⑧(원안과 같음)</p> <p>⑨..... ..... <u>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개발</u>..... ..... ..... <u>개발사업시행자</u>..... ..... ..... ..... ..... .....</p>
<p>⑩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자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활로 계산할 수 있다.</p>	<p>⑩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활로 계산할 수 있다.</p>
<p>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등)</p> <p>①~②(생략)</p> <p>③(생략)</p>	<p>제39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등)</p> <p>①~②(원안과 같음)</p> <p>③(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p>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p> <p>①(생략)</p> <p>1. <u>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u>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통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p> <p>②~⑤(생략)</p> <p>부칙</p> <p>①~②(생략)</p> <p>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u>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u>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p> <p>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u>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 계약분</u>부터 적용한다.</p>	<p>제39조의4(매각대금의 감면)</p> <p>①(원안과 같음)</p> <p>1. <u>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u> ..... ..... ..... ..... ..... ..... ..... ..... ..... ..... ..... .....</p> <p>②~⑤(원안과 같음)</p> <p>부칙</p> <p>①~②(원안과 같음)</p> <p>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u>이 조례 시행후</u>..... ..... .....</p> <p>④(매각대금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9조의4의 규정은 <u>이 조례 시행후 매매 계약분</u>부터 적용한다.</p>